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및 용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성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

· 법령 명칭 변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용어 정비

- 현행 : 폐수관거, 시설설치비(또는 설치비), 유지관리비(또는 운영비),
처리장, 유입차단장치
- 개정 : 폐수관로, 설치 부담금, 사용료, 처리시설, 유지차단장치

나.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상 조문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12조, 제29조)

- 위탁관리자 선정 기준,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배수기준을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
 - 「물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문 삭제
- 다.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증가산금 부과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25조)
-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 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하 “오·폐수”이라 한다”를 “이하 “오·폐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관거 및 부대시설”을 “관로 및 그 부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관거 및 부대설비를”을 “관로 및 그 밖의 배수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본 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내”를 “관내”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4조 전단 중 “한국환경공단이나 전문기관에”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설치비 및 운영비”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삽입한다.

제6조제3항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유지료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를 “다른 규정에서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7조제4호”를 “제7조”로, “유입차단장치”를 “유지차단장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설치 부담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설치 부담금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비용(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설치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설치비”를 각각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시설설치비 부과)”를 “(설치 부담금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설치비의”를 “설치 부담금의”로, “시설설치비를”을 “설치 부담금을”로, “분할고지”를 “분할 고지”로 한다.

제17조 제목 “(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을 “(설치 부담금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부담금”을 “설치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부담금”을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시설설치비의 재산정)”을 “(설치 부담금의 재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시설설치비를”을 “설치 부담금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유지관리비 부담”을 “사용료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사용료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오·폐수처리”를 “처리시설 운영”으로,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장 유지관리”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한다.

제20조 제목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를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지관리비를”을 각각 “사용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금을”을 “사용료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을 “사용료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중 “폐수관거나 처리장”을 “폐수관로나 처리시설”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연체료를”을 “가산금을”로 한다.

제25조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수관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비용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수관거, 시설설치비(또는 설치비), 유지관리비(또는 운영비), 처리장 및

유입차단장치는 이 조례에 따른 폐수관로, 설치 부담금, 사용료, 처리시설 및 유지차단장치로 각각 본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설 치 부 담 금 산 출 기 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설치 부담금

(1) 부담기준 : 전체부지 면적에 분양 부지면적으로 한다.(3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2) 산출근거

$$\bullet \text{ As} = \text{Fc} \times \text{KI} / \text{KT}$$

- As : 업소부담금액

- Fc : 용자금액(이자포함)의 100퍼센트 해당액

- KI : 처리시설 준공 시 업소별 총 분양 부지면적

- KT : 처리시설 준공 시 총 분양 부지면적

◦ 증설사업자의 증설사업비(폐수배출업체만 해당)

$$\bullet \text{ As} = \text{Fc} \times \text{Li} / \text{LT}$$

- As : 비용부담자가 분기별 또는 매년 부담하여야 할 개별부담금

- Fc : 용자금액(이자포함)의 100퍼센트 해당액

- LT : 설계 오염부하량

- Li : 증설 오염부하량 = (BOD부하 + COD부하) / 2 + 1.3SS부하

◦ 오염부하량 산출방법

-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당시 배출시설 허가증에 신고 된 예상 최대 오염 부하량을 기준 해서 산정

사 용 료 산 출 기 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circ A_s = 0.2M \frac{KI}{KT} + 0.8M \frac{QOI}{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s : 업소 부담금액
- [직접경비 + 간접경비(직접경비의 10%) + 감가상각비(1,322,000원)]
-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
- KI : 개별업소부지면적분양 부지면적
- QQT : 총 오·폐수배출 오염부하량
 - 폐수 : BOD+COD+SS/2
 - 오수 : BOD+SS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오염부하량
 - 폐수 : BOD+COD/2+SS
 - 오수 : BOD+SS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신 청 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생산품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 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설 치 부 담 금 부 담 대 상 신 고 서

신 고 인	상 호 또 는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내역서 1통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3.8>

설 치 부 담 금

(분기) 부담금 납부 고지서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부담근거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소장			

영 수 증

(분기) 설치 부담금 상환금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구미시장 귀하	

영 수 증

(분기) 설치 부담금 상환금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구미시장 귀하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3.8>

영 수 증

(월분) 사용료 부담금

(월분) 사용료 부담금 영수증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업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대 표 자	
납부기관				납부기관	
세입과목				세입과목	
부담근거				영수일자	
수량	BOD	COD	SS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구 미 시 장 귀하	
m ³ /일	mg/ℓ	mg/ℓ	mg/ℓ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를 고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구미시 농공단지 사업소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영수필 통지서

(월분) 사용료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귀하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독 축 장				
상 호		성명(대표자)		
주 소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설 치 부 담 금				
사 용 료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인) 구미시장 귀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을 받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구미시 관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오수 및 폐수(이하 “오·폐수”이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이 하 “오·폐수”라 한다----- ----- -----.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자(장)가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폐수관로”----- ----- ----- - 관로 및 그 부속시설----- -.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장)가 배출하는 우수를 제외한 오·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	4. ----- ----- ----- 폐수관로-----

결하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생략)

6. “계량기”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 관거 종말 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내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2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신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② (생략)

③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 관로 및 그 밖의 배수시설을 --.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

관내-----
-----.

<삭제>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
-----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제2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폐수관로-----

-----.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 ·
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
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
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
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
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
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 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
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
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 구조기
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유
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
지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입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

다른 규정에서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7조-----

----- 유입차단장치-----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고시된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장)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설치비 부과)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4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 비용(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1. 2. (현행과 같음)

② ----- 설치 부담금-----.

제15조(설치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 ----- 설치 부담금-----

- 설치 부담금 -----
-----.

제16조(설치 부담금 부과) ①-----
- 설치 부담금의 -----

제18조(설치 부담금의 재산정) --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퍼센
트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
할 수 있다.

제4장 유지관리비 부담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사
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
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 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따라 2년마다 유지관리
비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
부) ① 소장은 제19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시장을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
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
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설치 부담금 -----

----- 설치 부담금을 -

-----.

제4장 사용료의 부담

제19조(사용료의 부담) ①-----
----- 처리시설 운영-----
----- “사용료”-----

--.

② ----- 사용료-----
-----.

③----- 처리시설 사용료 -----
----- 사용료 --

-----.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① -----
사용료를 -----

- 사용료를 -----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
금을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
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가동
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
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
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
으로 산정한다.

1. · 2. (생 략)

제23조(부담금의 추정) 소장은 사
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배수기준
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
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
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
가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 ② (생 략)

③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
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② ----- 사용
료를 -----

---.

제21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

----- 사용료 부담

1. · 2. (현행과 같음)

제23조(부담금의 추정) -----

-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

-----.

제24조(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생략)

②채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채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채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가산금을 -----
--.

제25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27조(채납처분) -----

--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

제29조(권리, 의무의 승계) <u>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u> 제30조(사용의 제한) ①소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 ② (생 략)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생 략) ②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u>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삭 제> 제30조(사용의 제한) ①----- ----- ----- ---- <u>폐수관로의 전부 또는 일부</u>-----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u>처리시설</u>----- <u>부담</u> <u>금</u>-----.
---	--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⑦ 생략

⑧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

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

업체를 말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 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9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고아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mg/L)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식료품 제조업	그 외 업종
고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40m ³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구미시)	BOD	1,250	100
	COD	900	100
	SS	300	100
	T-N	80	50
	T-P	10	8
	총대장균군수 (개/ml)	100,000	100,000

소관 실·과		환경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엄 승 진
	담 당 자	김 형 순 (480-5282)